

폐업 신청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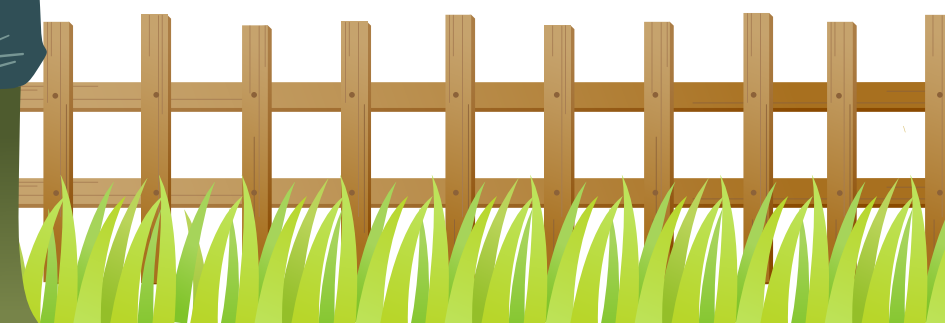
신청인	신청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지원금 신청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서·첨부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</li> <li>② 현지 조사·확인 후 결과는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</li> <li>③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사·조사 결과 보고</li> </ul>
농림축산식품부	지급 신청 총액 산출 후 재정 여건 및 품목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·보고 지시
지방자치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·보고</li> <li>② 해당 되는 농가에 지급 대상자 결정을 통지하고, 농가가 폐업 사실을 통보하면 확인을 거쳐 폐업지원금 지급</li> </ul>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한우

## 폐업지원금

에 대한  
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.



## 한우 폐업지원 사업



###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한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.

## 주요 내용

한우사업	1차	2차
신청자격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</li> <li>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또는 「축산법」에 따른 축산업 등록을 한 자(신청일 기준)</li> <li>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·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</li> <li>한우 2마리 이상 사육한 자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품목고시일 이후 (2013.5.31~12.22) 폐업농가</li> <li>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농가 -1차 신청 자격과 동일</li> </ol>
신청기간	2013년 7월 22일 ~ 2013년 9월 21일	2013년 12월 23일~2014년 1월 17일
출하 마릿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자체의 현지확인 마릿수로 하되,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마릿수 한도내에서 인정 - 송아지는 2013년 9월 21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품목고시일 이후 폐업농가 : 2013년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</li> <li>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아닌 폐업농가 : 지자체 현지확인 마릿수로 하되, 2013년 5월 31일 기준 사육마릿수 한도내에서 인정 - 송아지는 2014년 1월 17일까지 쇠고기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</li> </ol>
지원기준	출하 마릿수(사육마릿수×연간 회전율) ×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×3년	
마리당 지급단가	수소 811천원 : 마리당 순수익액(491,613원)×3년×회전율(0.55) 암소 899천원 : 마리당 순수익액(416,403원)×3년×회전율(0.72)	

## 사후 관리

폐업지원 대상 축사내에서는 향후 5년간 소(젓소 제외) 사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
-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사용하던 축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소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.
  - 타인 소유의 소를 위탁 사육하거나, 타인에게 축사를 임대하여 사육하게 해서는 안됩니다.
  - 소유하던 축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, 양수한 자의 사육도 금지합니다.
- ※ 위의 조건을 「보조금법」에 따른 조건으로 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되고 형사고발 됩니다.

## Q & A

**Q.** 이력제상 동일 축사 내에서 5명이 각각의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나, 3명만 폐업 신고 한 경우

**A.** 폐업신청하지 않는 2명이 추가 신청 기간내에 폐업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업신청자 3명은 자격대상이 안됨

**Q.** 축사를 임대하여 한우를 사육하던 중 폐업신청을 한 경우

**A.** 임차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폐업을 신청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가능함

**Q.** 동일 농장 내에 3개동 축사가 개별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면서 일부만 폐업 신청한 경우

**A.** 건축물 대장 등 축사 소유주를 확인 후 축사 동 단위로 폐업신청 가능